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영업소”를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으로, “다른”을 “같은 업종 또는 다른”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 (제35조관련)

구 분	수 수 료	
	전 자 민 원	방문 · 우편 민원
1. 영업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허가(신규)	45,000원	50,000원
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다만,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면제한다.)	27,000원	30,000원
다.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2,000원	5,300원
2.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	25,000원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 음	없 음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8,300원	9,300원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23,800원	26,500원
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2,000원	5,300원
3.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품목제조신고	18,000원	20,000원
나. 변경신고	9,000원	10,000원
다. 품목제조신고증 재교부신청	2,000원	5,300원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규격의 인정을 위한 신청	1,000,000원	1,100,000원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신청		
가. 신규신청	1,710,000원	1,900,000원
나. 변경신청	720,000원	800,000원
6.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	검사기관이 정 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검사기관이 정 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7. 영업자지위승계신고(다만, 제14조제1항에 따 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 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8,300원	9,300원

별지 제1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45,000원	50,000원

별지 제4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000원	5,300원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7,000원	30,000원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5,000원	28,000원

별지 제12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000원	5,300원

별지 제13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1) 영업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음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 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 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300원	9,300원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23,800	26,500원

별지 제15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18,000원	20,000원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000원	5,300원

별지 제18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9,000원	10,000원

별지 제28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8,300원	9,300원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교육시간) ① (생 략)	제19조(교육시간)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u>같은 영업소</u> 에서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 같은 호의 <u>다른</u> 업종으 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 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 <u>기존 영업의</u> <u>영업소가 속한 특별시 · 광역시</u> <u>·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u> <u>의 관할 구역</u> --- <u>같은 업종 또</u> <u>는 다른</u>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